

제316회 정례회
2012. 12. 20(목)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 12. 20(목)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김양희 의원

나.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2년 11월 28일
- 회부일자 : 2012년 12월 5일

다. 상정일자 : 2012년 12월 13일

-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복지위원회 김양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응급처치 미흡으로 응급실 도착 전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사례 지속 발생. 따라서 응급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 필요성 확대

<응급실 이용자 수>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충청북도	357,968명 (2,582명)	334,880명 (2,502명)	313,236명 (2,768명)
전국	10,814,628명 (42,110명)	10,232,016명 (41,441명)	10,327,028명 (40,355명)

※ ()안은 응급실 도착 전 사망자 수, ※ 자료출처 : 2011응급의료 통계연보

- 특히, 자동제세동기의 사용이 필요한 심장질환 사망자가 전체 사망률의 9.7%(‘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북도 증가 추세로,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도민 홍보, 사용 교육 및 관리의 내실화 필요.
※충북 심장질환 사망자 : 750명(‘08)⇒894명(‘09)⇒867명(‘10)⇒949명(‘11)

- 따라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 발생 시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즉각적 응급처치를 통해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방법 및 응급조치 요령에 대한 설치장소 홍보 및 활용 교육, 관리를 규정하고, 연차적 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응급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령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홍보, 관리, 교육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까지 확대 포함(안 제3조)
- 정기교육 실시를 의무화 하고 교육대상을 법령에 따른 대상자 외에 “도지사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교육을 원하는 도민”까지 확대(안 제5조)
- “자동제세동기” 등의 설치장소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적극적 홍보를 적시하여 활용도 제고 유인(안 제6조)
- “자동제세동기” 의무설치 기관 등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점검 의무화 및 도차원의 관리실태 정기 점검 의무화 등 체계적 관리체계를 적시하여 자동제세동기 사용의 효율성 제고 (안 제7조)

- 충청북도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 제13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일 2012.8.5)에 따라, 응급의료위원회 심의사항 변경(안 제8조)
 - 동법 시행령 개정(2012. 8.3)에 따라, 위원자격 변경(안 제9조)
- 종전 “충청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안 부칙 제2조)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홍범희)

- 동 조례안은 매년 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즉각적 응급처치를 통해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방법 및 응급조치 요령에 대한 설치 장소 홍보 및 활용 교육, 관리 등을 규정하는 등 응급처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자의 감소를 위한 도 차원의 역할을 명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1부.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의3 제1항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 인력의 공급 및 교육·훈련계획
2.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계획
3. 환자이송체계의 운영계획

4. 응급의료정보 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계획
5. 재해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체계의 대응계획
6. 자동제세동기 설치, 홍보 및 관리에 관한 계획
7. 자동제세동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홍보계획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계획은 응급의료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 등)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제세동기 설치 장소 홍보 및 관리
2.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② 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도지사는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자동제세동기 관리 책임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제세동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도지사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자동제세동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원하는 도민

제6조(응급장비 홍보) 도지사는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설치장소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여 일반 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동제세동기 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기관의 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점검
2.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자동제세동기 사용 교육
3. 자동제세동기 사용설명서 및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보관

② 자동제세동기가 사용된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한 사람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에게 알려 즉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응급처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13조의6에 따른 충청북도 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응급의료를 위한 재정의 사용
3.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4.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2.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대표하는 자

3. 충청북도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응급의료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로 본다.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응급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등 즉각적 응급처치 및 즉각 조치를 통해 생명 보호
- 자동제세동기 홍보, 교육, 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조례 제정

2. 비용 발생 요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의 규정에 의거 매년 도내 시군 순회를 통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책자, 현수막 등) 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제5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 추진 중인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사업비를 기초로 작성
- 기 추진 중인 사업비 외 별도 추가사업비 발생 없음

나. 추계 결과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사업비 : 매년 20,000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응급의료기금) 50%, 도비 5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장 이 주 원

관 계 법 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국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교육·홍보 계획
 - 나. 생활환경 속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 다. 응급의료의 평등한 수혜를 위한 계획
2.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민간 이송자원의 육성 및 이송체계의 개선 계획
 - 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지원 및 육성 계획
 - 다. 응급의료 인력의 공급 및 육성 계획
 - 라.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계획
 - 마.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계획
 - 바.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대비·대응 계획
3. 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기본계획의 달성목표 및 그 추진방향
 - 나. 응급의료제도 및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 다. 응급의료재정의 조달 및 운용
 - 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13조의5에 따른 중

양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시행일 2012.8.5]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시·도지사에게 계획 및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개정 2011.8.4>)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1.8.4, 2012.6.1>

1.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08.6.13, 2010.1.18, 2011.8.4>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8.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8.4> [시행일 2012.8.5]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개정 2012.5.1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9.6.9, 2011.3.8, 2011.8.4, 2012.2.1><시행일 2012.8.5>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12.5.14>

③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12.14]

□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의2(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법 제14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충족하는 강습교육만 해당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8.3]

제8조(응급처치 교육·홍보 계획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이하 "교육·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

② 교육·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홍보의 대상·내용·방법

2. 그 밖에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교육·홍보 관련 전문가나 단체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교육·홍보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8.12.31]

제26조의2(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3.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4.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6.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0.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